건물 위생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위생관리]

건물의 안전관리만큼이나 건물의 위생관리 역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저수조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 정기적인 소독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물 위생관리 1
1. 건물 위생관리 알아보기 4
1.1. 건물 위생관리 이해하기 4
1.1.1. 법령정보의 제공범위 4
1.1.2.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4
2. 청소관리 6
2.1. 폐기물 배출관리 6
2.1.1.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6
2.2. 화장실 관리 9
2.2.1.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9
3. 상하수도 관리 13
3.1. 상수도 관리 등 13
3.1.1. 저수조 관리 13
3.1.2. 급수관 관리 15
3.1.3.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16
3.2. 하수도 관리 17
3.2.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7
4. 실내공기 관리 20
4.1. 실내공기질 관리 등 20
4.1.1. 실내공기질 측정 20
4.1.2.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21
4.1.3.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24
4.1.4.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26
5. 소독 관리 28
5.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28
5.1.1. 소독의 실시 28

1. 건물 위생관리 알아보기

1.1. 건물 위생관리 이해하기

1.1.1. 법령정보의 제공범위

본 콘텐츠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건물"이란?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법령정보 제공범위
>
>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
>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위생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 위생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의 범위

▪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 콘텐츠에서는 위 법령정보 제공범위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을 관리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활동을 건물 위생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합니다.

> ※ 아파트 등의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위생관리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관리의 주체

▪ 건물의 위생과 관련된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 관리	쓰레기 배출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수도 관리	저수조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급수관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 관리	건물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운영자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관리방식의 종류

- 건물의 관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됩니다.
-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대형건물에서 이용됩니다.
-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2. 청소관리

2.1. 폐기물 배출관리

2.1.1.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청결유지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제한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 **"폐기물"이란?**
>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제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1.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2조)

2.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배출기준

▪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 단,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보고 및 검사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6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4호).

▪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 ※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원재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금지됩니다.

폐기물 투기·매립·소각의 제한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 그 밖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화장실 관리

2.2.1.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6. 휴게시설
7.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
14. 공항시설
15.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인의 지정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 위생교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합니다.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호).

유료화장실의 관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리기준이 준용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의 준용 등

▪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참조).

▪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위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참조).

> ※ **"준용"이란?**
>
>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합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으나,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점도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제13조).

▪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가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 ※ **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의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
>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하수도 관리

3.1. 상수도 관리 등

3.1.1. 저수조 관리

건물 내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2항제3항 참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소독등위생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도법」 제33조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제3항 참조).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참조).

>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저수조의 수질검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위반 시 제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기준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전단).

▪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후단).

> ※ 그 밖에 저수조청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급수관 관리

건물 내 급수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구분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 아파트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 “갱생(更生)”과 “세척”이란?

「수도법」에서 말하는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9호).

한편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참조).

급수관의 검사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이하 “일반검사”라 함)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이하 “전문검사”라 함)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공지 및 자료의 보존 등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세척등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반 시 제재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급수관에 대하여 세척등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3.1.3.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참조).

-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관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6조제3항 참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보전원
  - 한국환경공단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교육비의 부담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하수도 관리

3.2.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1항).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4. 실내공기 관리

4.1. 실내공기질 관리 등

4.1.1. 실내공기질 측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함)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함)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함)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실내공기질은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기기의 부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실내공기질의 측정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table>
<tr><th>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th><th>미세먼지(PM-10)(㎍/㎥)</th><th>초미세먼지(PM-2.5)(㎍/㎥)</th><th>이산화탄소(ppm)</th><th>폼알데하이드(㎍/㎥)</th><th>총부유세균(CFU/㎥)</th><th>일산화탄소(ppm)</th></tr>
<tr><td>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td><td rowspan="2">100 이하</td><td>50 이하</td><td rowspan="3">1,000 이하</td><td>100 이하</td><td>-</td><td rowspan="3">10 이하</td></tr>
<tr><td>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td><td>40 이하</td><td>100 이하</td><td>-</td></tr>
<tr><td>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td><td>75 이하</td><td>35 이하</td><td>80 이하</td><td>80 이하</td></tr>
<tr><td>라. 실내주차장</td><td>200 이하</td><td>-</td><td>100 이하</td><td>-</td><td>25 이하</td></tr>
<tr><td>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td><td>200 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는"(측정망·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 등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실내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도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3.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받고 그에 대한 증명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4.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등(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교육시간 및 횟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 및 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구분	교육기준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6시간 이수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단,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 6시간 이수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 ※ 실내공기질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소독 관리

5.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5.1.1. 소독의 실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6. 집단급식소(한 번에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소독횟수

▪ 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소독실시

▪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